

군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1년 12월 8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군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

(김귀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.

발 의 자 : 김귀근, 성복임, 장경민,
이건행, 홍경호, 신금자,
이길호, 이희재, 이우천

1. 제안이유

- 군포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군포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·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향상·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- 나.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~안 제6조)
- 다.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수당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안 제10조)

3. 관련법령

- 해당없음

군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군포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·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향상·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문화의 거리 지정) ①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도시의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,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, 시민의 이용도, 문화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3조(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)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후,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,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2.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3.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·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주변 도시환경 개선)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.

1. 가로등, 벤치, 거리전시대, 가판대 등의 장치물
2. 주변 건물의 색상
3. 간판, 안내표지판 등의 광고물
4. 그 밖에 광장, 계단, 수목 등 제반 도시환경

제5조(문화시설의 설치)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.

1. 조각,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
2. 소규모 공원,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
3.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

제6조(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)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시각예술 관련 업종
2. 음악 관련 업종
3. 도서 및 출판 관련 업종
4. 공예품 및 지역 상품
5. 공연장 및 전시장
6. 그 밖에 문화진흥에 필요한 업종

제7조(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행사)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각종

공연·전시 및 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)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
2.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
3.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 사항
4.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「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군포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「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